

호주(Australia)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908년(노령 및 장애연금), 1942년(미망인연금)
- 현행법 : 1991년(사회보장), 1992년(퇴직연금관리), 1999년(가족세)

2 제도형태

- 기초사회보장 및 의무직역연금

3 적용대상

- 기초사회보장
 - 당연적용 : 호주 거주자 (일부 국외 거주자에 대한 적용 가능)
- 의무직역연금(SG : Superannuation)
 - 당연적용 : 세전소득이 월 A\$450를 초과하는 피고용자,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18세 미만 포함
 - 임의가입 : 자영자

4 재원조달

- 가입자
 - 기초사회보장 : 없음
 - 의무직역연금 (노령) : 세제혜택을 통한 임의납부 권장
- 자영자
 - 기초사회보장 : 없음
 - 의무직역연금 (노령) : 세제혜택을 통한 임의납부 권장
- 사용자
 - 기초사회보장 : 없음
 - 의무직역연금 (노령) : 기본금의 9%(2021년부터 매년 0.5%씩 증가하여 2025년도에는 12%)
 - 임의 추가납부 가능
- 정부
 - 기초사회보장 : 전체 비용 부담
 - 의무직역연금 (노령) : 연간 세후소득 A\$37,402 이하의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A\$20 이상 A\$500 이하의 연간보험료에 대해 A\$1 마다 A\$0.5를 매칭(matching)하여

납입. 매칭 납입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이 A\$37,402에서 A\$52,402까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들어 A\$0에 수렴. 연간 세후소득 A\$37,000 이하에 대하여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납입하는 A\$10 이상 A\$500 이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A\$1 마다 추가 A\$0.15 매칭 납입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급여

- 노령연금 (노령연금, 사회보장, 맹인 제외 소득 및 자산조사)
 - 65.5세 (2017년 7월부터 매 2년마다 6개월씩 증가하여 2023년 7월에는 67세) 연속 5년의 기간을 포함하여 호주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근로보너스수당 (소득조사) : 연금수급자가 퇴직연령 후에 계속 근로하는 경우 지급
 - 출국 전에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급여는 무기한으로 국외지급 가능(26주 후부터 감액지급)
 - 추가 지원 사항 : 노령연금 수급자는 자동적으로 연금보조금, 공과금보조금 및 수급자 카드를 지급받으며, 조건 충족 시 기타 보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가족 수당 참조
 - 의료카드 (연방노인건강카드, 사회보장, 소득조사) : 65.5세이며 (2017년 7월부터 매 2년마다 6개월씩 증가하여 2023년 7월에는 67세) 노령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
- 노령급여 (의무직역연금, 의무직역연금계좌)
 - 57세 (점차 증가하여 2024년 7월에는 60세)
 - 고용은 중단되어야 함

○ 장애급여

- 장애연금 (장애보조연금, 사회보장, 맹인 제외 소득 및 자산조사)
 - 영구적인 육체적·지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16세 이상 정상퇴직연령 이하인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노동을 지속할 수 없으며, 장애로 인하여 2년 안에 근로복귀를 위한 재교육을 수료할 수 없는 자
 -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지 않았다면 장애보조연금 청구 직전 3년 중 18개월 이상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였어야 함
 - 1주일에 최소 8시간 근로할 수 있다고 판정받은 35세 미만 수급자는 근로활동을 하여야 함
 - 주당 국가최저임금 : A\$719.20
 - 호주 거주자가 되기 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청구 당시 호주에 거주하고 5년 이상 연속 거주기간 포함 10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보유하여야 함
 - 특정 조건 하에 국외지급 가능
 - 추가 지원 사항 : 장애보조연금 수급자는 자동적으로 연금보조금, 공과금보조금 및 수급자카드를 지급받으며, 조건 충족 시 기타 보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피부양 자녀가 없는 21세 미만 수급자는 자동적으로 청년장애보조금(실업 참조), 의약품 수당, 통신 수당, 공과금 수당을 지급 받음 가족 수당 참조
- 간병급여 (간병급여, 사회보장, 소득 및 자산조사)
 - 장애(노령으로 인한 장애 포함) 또는 심각한 질환을 보유한 자에게 일반 가정에서 상시간병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 다른 소득보조급여를 지급받지 않아야 하며, 간병인과

간병대상이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함

- 소득 및 자산조사 : 간병인과 간병대상 모두 소득 및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추가 지원 사항 : 간병급여 수급자는 자동적으로 연금보조금, 공과금보조금 및 수급자 카드를 지급받으며, 조건 충족 시 기타 보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가족 수당 참조
- 간병수당 (간병급여, 사회보장, 소득조사)
 - 장애(노령으로 인한 장애 포함) 또는 심각한 질환을 보유한 자에게 일반 가정에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간병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 다른 소득보조급여를 지급받지 않아야 하며, 간병인과 간병대상이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함
 - 소득 및 자산조사 : 부부의 경우 연간소득이 A\$250,00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연방노인건강카드 및 일부 가족수당 수혜자에 대해서는 소득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함
 - 간병인보조금(간병자보조금) : 간병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됨
 - 간병인조정급여(간병자조정급여) : 재난 등으로 인해 중증장애 또는 심각한 질환에 시달리는 7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간병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됨. 다른 소득보조급여를 지급받고 있지 않아야 함
 - 아동장애보조금 : 16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간병수당 수급자에게 지급
- 고립아동보조금 (사회보장)
 - 가족 수당 참조
- 장애급여 (의무직역연금, 의무직역연금계좌)
 - 완전하고 영구적인 장애로 인해 의무직역연금 가입자가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 계좌 잔고 전액 인출 가능

○ 유족급여

- 미망인수당 (사회보장, 소득 및 자산조사)
 - 1955년 7월 1일 또는 이후에 출생한 여성으로, 혼인관계에 있지 않고, 40세에 사별 또는 이혼하였거나 그 나이부터 별거해왔으며, 최근 근로기록이 없었어야 함. 특정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현재 동 제도는 점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따라서 2018년 7월 1일 이전에 급여 청구를 진행한 수급자에게만 지급
 - 소득 및 자산조사 : 수급자 본인의 소득 및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됨
 - 추가 지원 사항 : 미망인수당 수급자는 자동적으로 연금보조금, 공과금보조금 및 수급자 카드를 지급받으며, 조건 충족 시 기타 보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가족 수당 참조
- 완전고아연금 (이중고아연금, 사회보장)
 - 16세 미만(전업으로 고등교육을 받고 있으며 청년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16세부터 19세)이며 양부모를 모두 여위었거나 (또는 부모 한명은 사망하였고 다른 부모는 정신병동 또는 기타 시설에서 장기구금대상이거나 신변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난민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조건 충족 시)
- 사별급여 (사회보장)
 - 연금 수급자, 장기 수입 보조금 수급자, 가족세 급여 수급자의 자녀 또는 간병대상의 사망 시 유족인 배우자, 간병인, 또는 부모에게 지급
- 사별수당 (사회보장, 소득 및 자산조사)

- 재혼하지 않은 유족인 배우자에게 지급됨. 사망자와 유족인 배우자는 일부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함
- 추가 지원 사항 : 사별수당 수급자는 자동적으로 연금보조금, 공과금보조금 및 수급자 카드를 지급받으며, 조건 충족 시 기타 보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가족 수당 참조
- 유족급여 (의무직역연금, 의무직역연금계좌)
 - 가입자가 계좌잔고 전액을 인출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 시 지명 유족에게 지급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급여

- 노령연금(노령연금, 사회보장, 맹인 제외 소득 및 자산조사)
 - 독신자에게 2주당 최고 A\$916.30까지 지급. 부부 각자에게 2주당 최고 A\$690.70 지급 (2018년 9월 기준)
 - 근로보너스(소득 조사) : 수급자는 매 2주마다 A\$250의 소득을 연금 소득조사로부터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으며, A\$250의 근로보너스 유예 금액 중 미사용 분은 고용소득 은행에 A\$6,500까지 적립 가능. 고용소득은행 적립금은 향후 발생하는 고용소득에 대해 적립금만큼 연금 소득조사 고려대상에서 면제시키기 위해 사용가능
 - 추가 지원 사항 : 가족 수당 참조
- 의료카드 (연방노인건강카드, 사회보장, 소득조사)
 - 할인된 가격에 의약품 및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 ※ 급여조정 : 사회보장연금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과 연금가입자생활비지수 상승분 중 더 큰 수치에 근거하여 3월 및 9월에 조정됨. 부부기준 노령연금액은 남성의 주간 총소득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됨. 연방노인카드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됨
- 노령급여(의무직역연금, 의무직역연금계좌)
 - 계좌 잔고는 일시금 또는 정기연금 형태로 지급 가능

○ 장애급여

- 장애연금 (장애보조연금, 사회보장, 맹인 제외 소득 및 자산조사)
 - 21세 이상의 독신자에게 2주당 최고 A\$797.70; 부부 각자에게 A\$601.50
 -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는 피부양 자녀가 없는 20세 미만 독신자는 2주당 최대 A\$562.20, 18세~20세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 A\$412.80, 18세 미만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 2주당 A\$364.20(2017년 1월 기준)
 - 추가 지원 사항 : 가족 수당 참조
- 간병인급여 (간병자급여, 사회보장, 소득 및 자산조사)
 - 노령연금과 동일한 금액을 매 2주마다 지급
 - 간병인보조금 (간병자보조금) : 연 1회 A\$600 (간병대상 1인 당) 지급
 - 추가 지원 사항 : 가족 수당 참조
- 간병인수당 (간병자수당, 사회보장, 소득조사)
 - 매 2주마다 간병대상 1명 당 A\$127.10 지급

- 간병인보조금 (간병자보조금) : 연 1회 A\$600 지급
- 간병인조정급여 (간병자조정급여) : A\$10,000 이하의 일시금 지급
- 아동장애보조급여 : 수급권이 있는 자녀 1명당 A\$1,000을 연 1회 간병인에게 지급
- 고립아동보조금 (사회보장)
 - 가족 수당 참조
 - 급여조정 : 사회보장연금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과 연금가입자생활비지수 상승분 중 더 큰 수치에 근거하여 3월 및 9월에 조정됨. 부부기준 노령연금액은 남성의 주간 총 소득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됨. 21세 미만에 대한 장애연금과 간병인수당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1월 조정됨
- 장애급여 (의무직역연금, 의무직역연금계좌)
 - 계좌 잔고는 일시금 또는 정기연금 형태로 지급 가능

○ 유족급여

- 미망인수당 (사회보장, 소득 및 자산조사)
 - 피부양자녀가 없는 여성에게 2주당 A\$550.20 지급. 피부양자녀가 있거나 60세 이상이며 9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최대 A\$595.10 지급 (2018년 9월 기준)
 - 추가 지원 사항 : 가족 수당 참조
- 완전고아연금 (이중고아연금, 사회보장)
 - 매 2주마다 A\$63.80 지급
- 사별급여 (사회보장)
 - 일시금 지급 가능
- 사별수당 (사회보장, 소득 및 자산조사)
 - 배우자의 사망으로부터 14주 후까지 매 2주마다 최대 A\$834.20 지급, 유족인 배우자가 임신 중일 경우 수당 지급기간 연장 가능 (2018년 9월 기준)
 - 추가 지원 사항 : 가족 수당 참조
 - 급여조정 : 미망인수당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3월 및 9월에 조정. 이중고아연금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1월에 조정. 사별수당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폭과 연금가입자생활비지수 변동 폭 중 더 큰 수치에 근거하여 3월 및 9월에 조정됨
- 유족급여 (의무직역연금, 의무직역연금계좌)
 - 계좌 잔고는 일시금 또는 정기연금 형태로 지급 가능

7 관리운영기관

○ 기초사회보장

- 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 정책 개발 및 현금급여에 대한 전반적 감독 제공
 - www.dss.gov.au
- 복지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 사회 및 건강 관련 급여와 서비스 제공
- www.humanservices.gov.au

○ 의무직역연금

-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 사용자의 의무직역연금 보험료 납부 관리
 - www.ato.gov.au
- 호주자문규제국(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 개인 노령 기금(private superannuation funds) 규제
 - www.apra.gov.au, www.ato.gov.au

<2018년 ISSA 자료>